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4768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구합843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7.
판 결 선 고	2017. 11.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각 가산금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6. 11. 11.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금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5. 4. 14.자 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세 등 부과처분과 같은 목록 기재 2016. 11. 11.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2016. 11. 11.자 처분 중 각 가산금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1.경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재산세 등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6. 11. 11.자 처분 중 각 가산금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금 부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즉 C병원은 2016. 7.경 및 2016. 9.경 휴업 중이었고 원고가 이와 같은 휴업 사실을 매번 피고에게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원고 대표자의 주소지를 별도의 송달장소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6. 7.경 및 2016. 9.경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법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1320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면,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는 '의[redacted]시 E'에 위치한 사실, 피고는 2016. 7. 13. 및 2016. 9. 9.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등기우편물수취인서명부에 의하면 위 각 납세고지서는 2016. 7. 15. 및 2016. 9. 12.에 '회사동료 F'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서식을 갖춘 문서로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6. 7.경 및 2016. 9.경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갑 제12, 13,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G와 C병원 본관 지하 장례식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G가 위 C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장례식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C병원 장례식장의 입구는 병원 로비와 분리되어 병원 정문에서 건물 우측으로 돌아 계단을 통하여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점, ③ 종래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장례식장 직원이 수령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C병원 휴업 이후에는 직원을 보내어 우편물을 수거하거나 C병원 소속 의사 H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원고는 위 2016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제외하고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전부 수령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F은 1995. 7. 25.부터 C병원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2011. 10. 21. 이후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자로 전환하였고, '2011년 C병원에서 퇴사하고 이후에는 병원 장례식장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위 각 납세고지서의 우편조회서에 F이 '회사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F을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을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6. 7. 13. 및 2016. 9. 9.자로 발송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때는 2016. 11. 11.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산금 부분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16. 11. 11.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금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2010년부터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 4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부과과세방식인 재산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 제1심판결서 5쪽 14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C병원이 2010. 9. 11.부터 휴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4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15. 4. 14.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나아간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더 이상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과세방식인 재산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모든 세무조사 개시 사유를 적시에 발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단순히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무조사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가산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산금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별지1)

재산세등부과처분

1. 2015. 4. 14.자 재산세등부과처분

가. [redacted]도 [redacted]부시 [redacted] 외 9건(면적 13,031.8㎡)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1년분 재산세(토지) 52,442,080원, 지방교육세 7,829,900원

(2) 2012년분 재산세(토지) 58,112,310원, 지방교육세 8,682,510원

(3) 2013년분 재산세(토지) 62,438,710원, 지방교육세 9,333,360원

(4) 2014년분 재산세(토지) 64,953,000원, 지방교육세 9,711,710원

나. [redacted]도 [redacted]부시 [redacted]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1년분 재산세(건축물) 9,507,730원, 지역자원시설세 5,789,670원, 지방교육세 1,218,940원

(2) 2012년분 재산세(건축물) 10,146,150원, 지역자원시설세 6,183,500원, 지방교육세 1,300,790원

(3) 2013년분 재산세(건축물) 9,938,020원, 지방교육세 1,274,110원

(4) 2014년분 재산세(건축물) 9,906,290원, 지방교육세 1,270,04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다. [redacted]도 [redacted]부시 [redacted]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1년분 재산세(건축물) 10,610원, 지방교육세 1,360원

(2) 2012년분 재산세(건축물) 9,040원, 지방교육세 1,150원

(3) 2013년분 재산세(건축물) 6,870원, 지방교육세 880원

(4) 2014년분 재산세(건축물) 5,300원, 지방교육세 680원

라.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1년분 재산세(주택) 8,986,420원, 지역자원시설세 6,800원, 지방교육세 1,298,650원

(2) 2012년분 재산세(주택) 9,831,680원, 지역자원시설세 5,470원, 지방교육세 1,423,870원

(3) 2013년분 재산세(주택) 10,523,240원, 지역자원시설세 4,090원, 지방교육세 1,526,330원

(4) 2014년분 재산세(주택) 11,026,480원, 지방교육세 1,600,88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2. 2016. 11. 11.자 재산세등부과처분

가.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외 13건(면적 13,177.4㎡)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6년분 재산세(토지) 70,622,400원 및 (중)가산금 2,966,130원

(2) 2016년분 지방교육세 10,417,280원 및 (중)가산금 437,510원

나.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 9,464,580원 및 (중)가산금 624,640원

(2) 2016년분 지역자원시설세 5,762,620원 및 (중)가산금 380,320원

(3) 2016년분 지방교육세 1,213,410원 및 (중)가산금 80,080원

다.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 5,890원 및 (중)가산금 170원

(2) 2016년분 지방교육세 750원 및 (중)가산금 20원

라. [redacted]시 [redacted]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6년 1기분 재산세(주택) 6,242,250원 및 (중)가산금 411,960원

(2) 2016년 1기분 지방교육세 908,440원 및 (중)가산금 59,950원

(3) 2016년 2기분 재산세(주택) 6,242,250원 및 (중)가산금 262,160원

(4) 2016년 2기분 지방교육세 908,440원 및 (중)가산금 38,150원.끝.